



한국교육과정평가원
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

한국대학교육협의회 · 한국교육과정평가원

교류협력협정서

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양 기관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, 우리나라 초·중등 및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며, 양 기관의 정보 교류와 학술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.

제 1조(목적) 이 협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한다)의 학술·연구·인적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기본원칙)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 제 규정 및 다양성을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 3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상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함은 물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공동 연구 수행 및 세미나, 워크숍, 포럼, 심포지엄 등 각종 학술대회 공동 개최
2. 각종 연구개발 관련 지식·정보·인프라의 공동 활용 및 연구결과물 공유
3. 인적 교류 및 상대기관에 대한 자문요청
4.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조

제 4조(비밀엄수) 본 협정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상대 기관의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제 5조(재원 및 사업) 양 기관은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는 협력 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국제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얻도록 노력하며, 사안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 확보 및 구체적 사업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 6조(협정기간)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. 또한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협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은 자동적으로 3년씩 연장된다.

제 7조(협정의 변경 및 해지)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협정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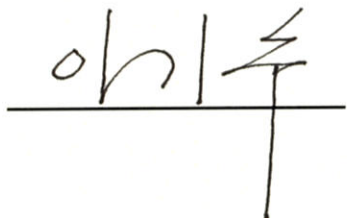
1. 양 기관이 협정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
3. 단, 이 협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 8조(효력발생) 이 협정서는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양 기관은 이 협정서에 날인하고 협정서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 9조(기타) 본 협정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의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2010년 11월 15일

한국대학교육협의회
회장 이 기 수



한국교육과정평가원
원장 김 성 열

